

대법원 2017. 6. 15 선고 2017다8128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7. 6. 15 선고 2017다8128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17. 2. 10 선고 2016나5357 판결

전 문

원고, 상고인A

피고, 피상고인B

판결 선고 2017. 6. 15.

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6나5357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

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박상옥

대법관김창석

주심대법관조희대